

ISSUE REPORT

구분 17-3 | 송부일 2017.11.9. | 담당자 방문옥 선임연구원 (moonoki@cgs.or.kr) 박성식 연구원 (sspark@cgs.or.kr)

CJ대한통운 (000120)

등급	2016	2017	비고
ESG 통합	A	B+	
지배구조	B+	B+	
사회	A	B+ (▼1)	
환경	A	A	민감도 "중"

Recent issue

관련분야 사회 - 근로자

다소 부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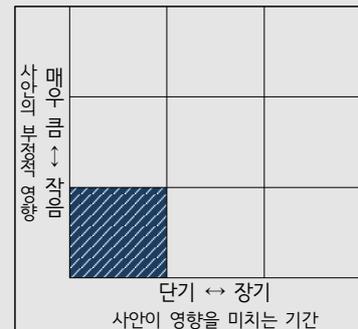
택배연대노조 합법화, CJ대한통운본부 발족

- 고용노동부,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에 설립신고증 발급 (11.3)
-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특수고용직이지만, 택배기사가 택배회사의 매뉴얼을 따르고, 회사와 대리점의 지휘·감독을 받으므로 노조법 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
- 택배연대노조 구성원의 70%가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인 점, 관련 이슈도 많은 점을 고려해 CJ대한통운본부 발족 예정

(출처) 뉴스토마토, 2017.11.5., 택배연대노조 합법노조로...CJ, 무노조 방침 수정 '불가피'

담당자 의견

-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분쟁이 잦았으며, 특히 택배기사의 단결권과 관련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점을 고려할 때,
- 단기적으로 사측과 노조의 초기대립이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택배사업의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나,
- 既설립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지속해오던 경영철학(勞使不二)과 2012년까지 6년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등의 경험을 고려할 때,
-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, 근래에 제기되던 부정적인 근로자 이슈가 해소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



『사회 - 근로자』 관련 이슈 기록

반영 여부

